

1. 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25호, 2023. 6. 1.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3. 7. 2.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등(안 제2조~제4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피해지원총괄과, 전세피해조사과, 피해조사팀을 두며, 단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안 제5조 및 제6조)

단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피해지원총괄과, 전세피해조사과, 조사지원팀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세피해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조사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정부 유관단

체·민간단체·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 및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피해지원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세사기 관련 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예방 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세사기 관련 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운영 및 확대에 관한 사항
7. 전세사기피해 지원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8.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위원회 운영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상정 안건의 취합 및 관리

라. 위원회 일정, 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마.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예산의 집행 및 예·결산

바.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와 심의자료 등의 관리

사.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의 이행

10.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11. 인사·서무·보안(일반)·감사·통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전세피해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서 접수된 건에 한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
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추가 조사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결과에의 검증 및 검토의견의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조사

나. 이의신청의 접수 및 재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의 조사, 대상자 소
명의견 등의 검토

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시·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 등에 관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사당국, 금융기관 등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세사기 피해조사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7. 전세사기 피해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접수된 건에 한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추가 조사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시·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의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조사
 - 나. 이의신청의 접수 및 재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의 조사, 대상자 소명의견 등의 검토
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시·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 등에 관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사당국, 금융기관 등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공매 유예 조치(긴급)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의 송달 등 관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에 파견된 자와 제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지원단의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별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정원(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계	고위(나)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정 원	35	1	2	1	11	20
	(별도정원)	(12)	(1)	(2)	(1)	(6)	(2)
단 장	정 원	1	1				
	(별도정원)	(1)	(1)				
피해지원 총괄과	정 원	11		1		4	6
	(별도정원)	(4)		(1)		(3)	
전세피해 조사과	정 원	15		1		5	9
	(별도정원)	(3)		(1)		(1)	(1)
조사지원팀	정 원	8			1	2	5
	(별도정원)	(4)			(1)	(2)	(1)

- 1) 별도정원 5급 6명 중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6급 이하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각각 충원한다.
- 2) 별도정원 외 23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비별도 파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으로 충원한다.